



제 417국회 (임시회)  
제 1 차 정무위원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벌칙 상향〉

■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15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정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25.
3. 회 부 일 : 2024. 6. 2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흔히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현행법상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欺罔)이나 공갈(恐喝) 등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만들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범죄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도 포함됨.

현행법은 보이스피싱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2011년에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기여해옴.

그런데 막상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서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제도적·이론적 설명일 뿐이며,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수법도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어서 선량한 시민이 심각한 물질적 피해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 종종 발생할 정도로 사회적 병폐가 극심함.

특히 사기범죄는 사회구성원들의 협력과 공존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벌칙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폭 상향하고, 범죄수익의 3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위하효과(威嚇效果)를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5배에 상당하는 벌금(병과가능)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10배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강화하고, 그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 현행                                                                                                          | 개정안                                                                                       |
|-------------------------------------------------------------------------------------------------------------|-------------------------------------------------------------------------------------------|
|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u>1년</u>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u>5배</u>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 제15조의2(벌칙) ① -----<br>----- <u>10년</u> -----<br>----- <u>10배</u> -----<br>-----<br>-----. |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u>처벌한다</u> .                                                                                   | ② ----- <u>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u> .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병과가능), 그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하며, 상습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범한 자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 대한 벌칙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정 이전부터 2014년까지는 「형법」 제347조(사기죄)와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였고 ② 2014년부터 2023년까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처벌하였으며 ③ 지난 2023년 벌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15조의2를 개정하여 현재까지 처벌해오고 있음.

○ 먼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정 전부터 2014년까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sup>1)</sup> 다른 사기 관련 범죄와 마찬가지로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제347조의2)로 처벌하였음(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sup>2)</sup>

- 미수범은 「형법」 제352조<sup>3)</sup>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였음.

○ 그런데,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등장한 ATM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하여는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제347조의2)를 적용한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면서,<sup>4)</sup> 2014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여

---

1) 2011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정 당시,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 대한 벌칙은 규정하지 않았음.

2)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법 개정당시 대법원 판례(87도1042, 99도1326)에 따르면 ‘계좌이체를 해준다’라는 피기망자의 처

전기통신금융사기<sup>5)</sup>를 목적으로 ①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②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기존 「형법」보다 벌금 상향)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조항(법 제15조의2)을 신설하였음.

- 벌칙조항 신설 시,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함께 규정하였음.<sup>6)</sup>

○ 그러나, 벌칙조항 신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힘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국회는 2023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

분의사(처분결과에 대한 인식)가 있어야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한데(처분의사 필요설), 세금환급형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세금환급절차라고 속아 ATM에 ‘인증코드(실제로는 범인의 계좌번호)’와 ‘보안코드(실제로는 입금액수)’를 입력하는 등, 일부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가 현금인출기에서 이체에 필요한 숫자를 스스로 누르고 이체를 실행했다라도 ‘계좌이체’라는 결과를 인식한 행위가 아닌 경우(세금환급 등을 결과로 인식)에는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성립이 어려웠음(법 개정당시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다만, 현재는 2017. 2. 16.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13362)에서 ‘피기망자의 처분의사는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례의 입장을 변경함에 따라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대부분 「형법」상 사기죄 또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처벌되고 있음.

#### 5)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6) 「형법」 제29조가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미수범의 처벌을 위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필요함.

벌칙조항을 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병과 가능) 벌칙 조항을 개정하였음.

- 당시 벌칙 규정을 강화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대면편취형’ 7)보이스피싱을 포함하였음.

[표 1] 전기통신금융사기 벌칙조항 개정추이

| ~ 2014.7.28.                                                                                                                                                                                                                                                                                                    | 2014.7.29. ~ 2023.11.16.                                                                                                                                                                         | 2023.11.17. ~ 현행                                                                              |
|-----------------------------------------------------------------------------------------------------------------------------------------------------------------------------------------------------------------------------------------------------------------------------------------------------------------|--------------------------------------------------------------------------------------------------------------------------------------------------------------------------------------------------|-----------------------------------------------------------------------------------------------|
| 형법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
|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br>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br>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
|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7) 사기범 등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교부받는 “교부형”사기 또는 사기범이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배송받아 직접 자금을 인출하는 “인출형”사기 등

□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범죄가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신뢰를 저해하는 등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벌칙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범죄수익의 3배~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서 3배~10배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형법」에 따른 미수범에 대한 감경·면제를 배제하여 미수범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미수범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sup>8)</sup>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억제하려는 취지임.

○ 최근 7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발생건수는 2019년을, 피해금액은 2021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지난해에도 2만건에 가까운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하여 4,500억원 가량 피해를 입히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은 여전히 큰 상황임.

---

8) 「형법」은 원칙적으로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임의적 감경, 제25조),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중지미수)에는 형을 감경·면제하도록 하고(필요적 감면, 제26조),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에 있는 때(불능미수)에는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임의적 감면, 제27조) 있으므로, 미수범에 대한 형의 감경·면제를 배제함으로써 미수범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라는 특별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표 2]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별 통계

(단위: 건, 억 원)

| 구분   | 합 계    |       | 기관사칭형  |       | 대출사기형  |       |
|------|--------|-------|--------|-------|--------|-------|
|      | 발생건수   | 피해금액  | 발생건수   | 피해금액  | 발생건수   | 피해금액  |
| 2016 | 17,040 | 1,468 | 3,384  | 541   | 13,656 | 927   |
| 2017 | 24,259 | 2,470 | 5,685  | 967   | 18,574 | 1,503 |
| 2018 | 34,132 | 4,040 | 6,221  | 1,430 | 27,911 | 2,610 |
| 2019 | 37,667 | 6,398 | 7,219  | 2,506 | 30,448 | 3,892 |
| 2020 | 31,681 | 7,000 | 7,844  | 2,144 | 23,837 | 4,856 |
| 2021 | 30,982 | 7,744 | 7,017  | 1,741 | 23,965 | 6,003 |
| 2022 | 21,832 | 5,438 | 8,930  | 2,077 | 12,902 | 3,361 |
| 2023 | 18,902 | 4,472 | 11,314 | 2,364 | 7,588  | 2,108 |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

□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입법형성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권한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법정형 상향조정 여부 등을 논의하는 경우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입법 시의 상황과 환경, 국민의 가치관과 법감정,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어 이제 시행 초기에 있는 상황이므로, 법률 개정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고 추가 개정을 논의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대법원 양형위원회<sup>9)</sup>는 기존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도 다른 사기범죄와 마찬가지로 2011년에 설정된 “사기범죄 양형기준”<sup>10)</sup>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2023년 11월 17일 시행에 따라 2024년 4월 29일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를 새로이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2025년 3월경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임.<sup>11)</sup>
- 금융위원회 역시 개정법률의 효과를 지켜보고 추가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 법무부도 징역형 하한을 10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행위 태양, 수법,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등에 따라 죄질의 경중이 다양함에도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미수범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법과 책임내용에 관한 미수범과 기수범의 차이 및 「형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의 사기범죄와 형평성<sup>12)</sup>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9) 양형위원회는 형(刑)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라 대법원에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할 수 있음.

10)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나,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존중하도록 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음(제81조의7).

11) 양형위원회 보도자료, “양형위원회 4/29(월) 제131차 회의 결과”, 2024. 4. 29.

12)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참고로, 유사 범죄의 법정형을 살펴보면, 「형법」상 사기와 컴퓨터등 사용사기는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sup>13)</sup> 이득액이 5~50억원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득액 상당의 벌금(병과 가능)에,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이득액 상당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sup>14)</sup> 보험사기 역시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음.

[표 3] 유사 범죄행위에 대한 법정형

| 이득액               | 사기·컴퓨터등 사용사기                                | 보험사기                                            |
|-------------------|---------------------------------------------|-------------------------------------------------|
| 5억원 미만            | 10년 이하 징역<br>2천만원 이하 벌금<br>(형법 §347, 347의2) | 10년 이하 징역<br>5천만원 이하 벌금<br>(보험사기방지 특별법 §8)      |
| 5억원 이상<br>50억원 미만 | 3년 이상 징역<br>이득액 이하 벌금<br>(특정경제범죄법 §3)       | 3년 이상 징역<br>이득액 이하 벌금<br>(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1)       |
|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br>이득액 이하 벌금<br>(특정경제범죄법 §3)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br>이득액 이하 벌금<br>(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1) |

- 범죄수익 비례 벌금제를 규정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수뢰액 등의 2~5배 또는 2~10배 등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벌금을 징역형과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3)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1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표 4] 범죄수익 비례 벌금제 입법례

| 법률                         | 벌금                                                                                                                                                                                                                            |
|----------------------------|-------------------------------------------------------------------------------------------------------------------------------------------------------------------------------------------------------------------------------|
| 특정범죄<br>가중처벌 등에<br>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알선수뢰 시 수뢰액의 2~5배 벌금 병과(§2)</li> <li>- 조세(지방세)포탈, 면세유 부정유통,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시 포탈세액의 2~5배 벌금 병과(§8)</li> <li>-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시 계산한 세액의 2~5배 벌금 병과(§8의2)</li> </ul> |
| 특정경제범죄<br>가중처벌 등에<br>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국외도피 시 도피액의 2~10배 벌금 병과(§4)</li> <li>- 금융회사등 임직원 수재 시 수수액의 2~5배 벌금 병과(§5)</li> </ul>                                                                                               |
| 자본시장과<br>금융투자업에<br>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벌금 부과(§443)</li> </ul>                                                                                                                   |

문 의 처

02)6788-5106